

한국의 유괴보도 사례와 문제점

오소백

한국홍보연구소장

1. 유괴사건은 사회의 연대책임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는 지구의 무게보다도 더하다.」

어느 범죄건 악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범죄 중에서도 유괴는 최악의 범죄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어린이 유괴는 사회의 연대책임으로 이를 감시·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사기관이나 미디어의 힘만으로는 유괴사건을 막을 길이 없다.

오래 전의 일로 기억된다. 스파이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든 수사력을 입체적으로 동원했으나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의 제보로 범인은 결국 잡혔다. 이 스파이사건 이외에도 주민의 제보로 범인을 잡은 일은 적지 않다.

수사기관·시민·미디어가 한 덩어리가 돼서 서로 도울 때 유괴사건은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유괴사건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 하고 인륜을 거역하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유괴 중에서도 가장 반사회적인 것이 어린이 유괴다. 천진난만한 어린이들, 무방비 상태의 어린이를 인질로 해서 목돈을 챙기려는 것은 너무도 비열한 공격성향의 범죄다.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제일 먼저 구출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어느 경우에도 간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린이는 어른 모두의 연대책임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어린이현장 ①⑤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①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⑤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되어야 한다.

⑥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는 보호 받을 권리만 있다. 다른 책임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다. 어린이의 「보호 받을 권리」에 대해 어른들의 사회는 그다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아직도 일부의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이용의 도구나 부수품처럼 여기는 흐름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어린이의 인권은 철두철미 어른이, 사회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력이 없다. 그들은 약하다. 그들은 늘 위험스런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들이 보호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 자체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잔뼈가 굵기까지는 온실 속에서 아늑하게 자라야 한다. 어느 유괴사건의 경우, 어린이가 버스 안으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고도 누구하나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다. 버스 차장은 차장대로 후환이 두려워 외면했다.

이 유괴어린이는 많은 어른들 앞에서 공개된 사회 현장에서 내팽개쳐진 셈이다. 끌려가는 어린이를 보고도 누구 한 사람 어린이 편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기에겐 관계된 일이 아니면 아예 눈감아 버리는 사회풍조가 너무도 서글프다. 끌려가는 그 어린이는 바로 모든 어머니들의 아들이다. 모든 아버지들의 아들이다. 모든 형, 언니들의 동생이다. 반대로, 끌려가는 그 어린이가 자기의 아들이나 동생이었다면 당장에 뛰어들었을 것이 아닌가?

민주사회는 연대사회·공동사회다. 연대의식·공동의식이 없는 민주사회는 오로지 에고이즘사회밖에 안된다. 너와 내가 서로 돕고 보살피는 데서만 민주사회는 싱싱해질 수 있을 것이다. 너와 내가 합쳐 우리가 될 때 민주사회는 참다운 연대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는, 범인을 잡을 때까지는 경찰의 편이다. 범인을 잡고 나면 기자는 범인의 편이 된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범인을 잡을 때까지는 경찰을 채찍질하고, 범인이 잡히면 범인의 인권도 지켜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2. 유괴의 목적, 유괴사건의 사례

어린이 유괴사건으로서 세상에 큰 경종을 울린 것은 1956년 3월, 진주에서 일어난 조인걸(5)군 납치사건이다. 그 뒤 유괴사건은 계속 늘어났다. 다행히 유괴사건의 검거율은 94%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건들은 아직 오리무중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겨질 염려도 있는 이 사건들은 제 2, 제 3의 범행을 유발할 소지가 적지 않을 것 같다.

지난 28년 동안에 일어난 주요 어린이 유괴사건은 26 건이다. 해마다 거의 1 건에 가까운 주요 어린이 유괴사건이 있는 셈이다.

범인들의 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금품이다. 요구금액이 가장 많은 것이 1억 5천만원, 가장 적은 게 2만 5천원. 이 밖에 5천만원, 1천만원을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다. 어느 범인은 사업자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이 분석한 유괴의 동기는 영리, 원한관계, 원한이 겹친 영리 등이다.

유괴된 어린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6살이 가장 많고 14살이 가장 적다. 유괴된 어린이 중, 최저연령은 4살, 최고연령은 14세다 전체적으로 보면 10살 미만이 가장 많은 셈이다. 유괴당하는 어린이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

10세가 넘는 어린이는 유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국민학교 저학년일수록 유괴의 표적이 되고 있다.

유괴된 어린이가 살해됐거나 시체로 나타난 것은 6건이 나 된다.

범인의 심리는, 우선 자기자신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어린이를 살해하는 동기는 자신이 어린이 때문에 짐스럽거나, 어린이 때문에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운 데서 저지른다. 또 하나는 어린이를 그냥 놔주면 증거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범인의 살의 여부는 뒤로 미루고, 살해는 기는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범인은 발등의 불을 먼저 끈다. 살해의 결과 따위는 그 다음문제다.

유괴범의 연령은 20 대~30 대의 젊은 층으로 지나치게 감정적인 편이다. 그래서 범인들은 이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괴사건이 사회문제로 번질 때마다 「어린 새싹을 공포분위기에서 보호하자」, 「등교 때는 짝지어서」 라는 등의 구호가 외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각심은 얼마 안가 크게 줄어든다.

<주요 어린이 유괴사건>

(1) 1956년 3월 조인걸(13·진주)

(2) 1960년 12월 23일 박승근(13·서울)

범인 매석환 자기집에 땅굴파 숨겨두고 1천만원 요구. 9일만에 검거. 광군 살아 돌아옴.

(3) 1962년 9월 10일 조두형 (5·서울)

유괴살해 뒤 20만원 요구. 미해결.

(4) 1963년 10월 12일 김희규(6·서울)

유괴살해. 범인 이복술 1백 12일만에 검거

(5) 1967년 5월 25일 이상범(7·순천)

유괴살해 뒤 30만원 요구. 범인 정종호 30일 만에 검거.

(6) 1967. 7. 18 박춘우 (7·진주)

유괴살해. 30만원 요구. 범인 김경태등 2명 18일만에 검거

(7) 1967년 10월 17일 김근하(11·부산)

과외공부 마친 뒤 귀가 중 피살. 시체는 상자에 넣어 버려짐. 미결.

(8) 1970년 5월 30일 유혜금(6·서울), 서혜자(6·서울)

약물에 중독돼 웅덩이에 버려진 시체로 발견. 미결.

(9) 1970년 8월 15일 정상영(6·인천)

30대가 유괴. 생사불명. 미결.

(10) 1970년 12월 11일 최현우(5·서울)

유괴 뒤 30만원 요구 전화·편지 24회. 생사불명. 미결.

(11) 1974년 4월 15일 김상범(11·부산)

유괴 뒤 시체로 발견.

(12) 1974년 4월 18일 김대현(6·서울)

유괴 뒤 50만원 요구. 전화·편지 16회, 생사불명. 미결.

(13) 1974년 9월 4일 이종찬(5·서울)

유괴 뒤 20만원 요구. 생사불명 미결.

(14) 1975년 2월 4일 문진식(4·충주)

유괴살해. 범인 김남웅등 2명 3일만에 검거

(15) 1975년 4월 24일 명재응(11·나주)

유괴 뒤 1천 3백만원 요구. 미결.

(16) 1975년 8월 7일 강형석(6·서울)

유괴살해 뒤 2백만원 요구. 범인 김모(19) 7일만에 검거

- (17) 1975년 8월 21일 김현정(6·부산)
1975년 8월 25일 배준일(6·부산)
연쇄유괴 살해. 미결.
- (18) 1976년 3월 16일 정홍기(7·김천)
유괴살해 30만원 요구 미결.
- (19) 1978년 9월 15일 정효주(9·부산)
범인 매석환 5천만원 요구. 33일만에 검거.
- (20) 1979년 2월 8일 유기형(12·시흥)
유괴살해 뒤 저수지에 버림. 1백 50만원 요구.
범인 이모(19) 검거.
- (21) 1979년 4월 14일 정호주(10·부산)
유괴 뒤 1억 5천만원 요구. 5일만에 생환. 범인 이원석 1년 8개월만에 검거.
- (22) 1980년 1월 28일 조광연(13·이천)
유괴살해 뒤 2만 5천원 요구. 범인 장용태 16일만에 검거.
- (23) 1980년 3월 21일 구완모(12·서울)
유괴살해 뒤 사업자금 요구. 범인 김선태 15일만에 검거.
- (24) 1980년 11월 13일 이윤상(14·서울)
1년 뒤 시체로 드러남, 담임교사가 살해. 검거.
- (25) 1987년 11월 6일 원혜준(5·서울)
250만원 받은 뒤 범인 44일만에 자수. 혜준 양은 피살.
- (26) 1988년 2월 15일 신규진(7·서울)
유괴후 500만원을 요구.

3. 극형이 사건방지책 못돼

각국마다 유괴범에 대한 엄벌주의를 채택, 몸값을 요구하는 유괴범의 경우, 미국(1년 이상 무기, 사형), 프랑스(10년 이상 무기), 브라질(8년 이상 무기, 사형폐지국), 일본(3년 이상 무기) 등이 모두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고, 나찌 독일에서는 무조건 사형에 처하는 특별법(53년 폐지)을 제정하기도 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73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유괴범을 최고 사형에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엄벌원칙을 비롯듯 유괴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1982년 첫 대서양 횡단비행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찰스 A 린드버그의 어린 아들을 유괴, 몸값 5만달러를 받고도 살해 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나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겨 유괴범에 대한 사형제도가 생겼다. 1963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호텔방에서 가수 겸 배우인 프랭크 시나트라의 외아들이 유괴돼 24만달러를 물고 풀려났다. 또 1967년 4월에는 캘리포니아의 금융회사 사장 허버트 영 씨의 아들 케네드 영 군(당시 11세)이 몸값 25만달러를 유괴범에게 치르고 풀려났다. 1974년 2월에는 극좌단체인 공생해방군(SLA)에 납치됐다가 SLA 강도단에 가담, 은행을 습격했던 샌프란시스코의 신문왕

랜돌프 허스트씨의 딸 퍼트리샤 허스트 양(당시 19 세) 사건으로 온 미국이 떠들썩하기도 했었다.

또 1975년 9월 이태리의 부유한 곡물상 딸인 고교생 크리스티나 양(당시 18 세)은 그의 가족들이 유괴범에게 1백만달러 이상의 몸값을 치렀는데도 이미 살해된 다음이었다.

1976년 1월 프랑스 중부 인구 12만의 조그마한 도시에서 벨트랑 군(당시 8 세)이 살해됐을 때는 온 시민이 격분, 장례식에 5만명이 참석하고 무덤 주위에는 꽃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였으며, 농기구판매상인 패트릭 앙리(당시 23 세)가 유괴범인으로 잡히자 온 시민이 「죽여라」고 합창했었다.

일본에서도 한 달에 평균 10명 이상의 어린이 유괴사건이 발생, 그 중 두 달에 1명 정도는 유괴범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4. 보도기준의 정신은 어린이 구출

유괴사건에 대한 보도는 신중히 다루고 있다. 어린이가 유괴되었다고 즉각 보도할 수는 없다.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공개수사를 할 때 보도하는 것을 관례로 삼고 있다. 그것은 너무 성급하게 보도해서 범인이 어린이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신속한 보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도를 할 때에는 유괴된 어린이의 주변 ·범행수법 ·유괴경위 등을 살살이 캐내지 않는다. 범행을 유도하고 수법을 알려주는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범행수법을 살살이 알리면 새 범인을 키우는 결과가 된다. 이런 사실은 붙잡힌 범인들의 고백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관례로 되어 있는 「보도기준」을 왕왕 위반하는 사례는 쉽게 가시지 않는다. 우리나라 신문윤리위원회보도기준이 마련된 건 21년(1967년 8월 1일)이 된다. 이 보도기준은 모든 신문이 자율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우리나라 신문윤리위원회 보도기준 중 유괴사건에 관한 보도는 다음과 같다.

(1) 유괴사건보도는 유괴된 자를 무사히 생환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유괴된 자가 범인의 수중에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보도를 보류한다. 그러나 유괴된 자를 구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도할 수 있다.

(2) 유괴보도에 관한 전모를 보도할 경우에는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취급하기로 한다.

신문윤리위원회 보도기준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옮겨본다. 다음에 든 8건의 결정은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사건과 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에 의한 것들이다.

보도기준 위반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건에 관계없는 선의의 제 3자를 연관시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② 유괴범 체포 전에 유괴사실과 범인의 협박내용을 보도, 인명존중을 위배했다. ③ 경찰의 공식발표 잘못으로 선의의 유괴범으로

단정했다. ④ 유괴소년의 이름 ·주소 ·사진을 보도, 보도기준을 위배했다. ⑤ ④와 같음. ⑥

수사내용을 살살이 묘사,(범인-가족간의 접촉 상황 등) 유괴된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염려와 어린이 구출에 도움이 안되므로 보도기준을 위배했다 ⑦ 단순용의자 이모의

주소 ·이름을 밝혀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 ⑧ 유괴사건과 관계없는 범인의 아버지 이름을

밝혀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 ⑨ (일본의 경우)경찰에 접수된 수색원을 보고 유괴어린이의

이름 ·학교명을 비롯, 유괴된 어린이 아버지의 주소 ·성명 ·연령을 보도,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 사건은 유괴된 것이 아니라 외출이었음이 밝혀졌다. ⑨ (일본의 경우) 수사기관의 공식발표 전, 현장에서 범인에게 돈을 주고 받는 장면을 TV 사진기자와 신문사진반이 찍었다. 기자단은 해당기자들을 제명 처분했다.

이상의 위반사례에서 보듯이 수사기관의 흥분으로 저지른 잘못도 있었고, 보도기관의 성급함으로 저지른 잘못도 있었다.

기사거리를 보면, 울렁거리는 것이 기자의 속성이기도 하다. 그들의 속성은 의도적이기보다는 자동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5. 보도기준전반에 대한 신문윤리위원회 결정사례

주문

경향신문 1967년 12월 13일자 7면 5단 「두형 군사건에 새 단서, 소실 오씨 주변의 최, 박 양인 소재수사」 제하 기사에 대해 경고한다.

사실

경향신문은 주문 계기 제하의 기사에서 두형 군 담당 수사단은 「……홍여인의 진술에 따라 두형 군의 아버지 조병옥씨의 소실인 남성여관(서울 남대문로 5가) 주인 오승자 씨의 주변인물 중 혈액형 O형인 최모와 박모 두사람에게 용의점을 두고……」 운운 보도하다.

이유

경향신문은 5년 전에 발생하여 아직도 미궁상태에 있는 두형 군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 치안국 수사과는 그 동안 범인으로부터 발송된 것으로 보여지는 20여통의 협박편지를 조사한 결과 우표에 묻은 타액에서 혈액형 O형을 밝혀내고 피해자의 부친인 조병옥 씨의 소실인 오승자(남대문로 5가, 남성여관 주인) 씨의 주변인물인 최모 및 박모 양인의 혈액형이 O형이라고 보고 이들의 소재를 수사중이라 운운했는데, 동 내용 중 피해자의 부친인 조씨의 소실 운운하여 조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으며, 또한 기사의 줄거리로 보아 조씨의 소실인 오승자 씨가 혈액형 O형으로 보여지는 최, 박 양인을 교사하여 범행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 사건이 5년 전에 발생한 해묵은 사건이라는 점과 사건 자체의 유동성으로 보아 이 시각 현재 단순 피의자로 밖에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지는 관계인물들의 신분을 공개하여 그들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 신문윤리실천요강 「타인의 명예와 자유」 장 제 2항, 제 3항을 적용,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한국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의 각 1968년 1월 11일자 부산소년 유괴사건에 관한 기사에 대하여 기각 경고한다.

본 결정의 주문, 이유 중 자사 해당부분을 지상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실

1968년 1월 8일의 부산시 대청동 4가 55번지 오도환의 3남 태웅(11세)군이 노상에서 실종되었던 바 다음날(9일) 오도환은 이 소년을 유괴 보호하고 있다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현금 60 만원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로 나오라는 것과 경찰에 통보하면 유괴된 소년은 살해될 것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박서간을 받아 경찰이 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한국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은 이 사실을 1 월 11 일자 7 면에 각각 보도하였다.

이유

위 「사실」 부분과 같이 한국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은 부산에서 있는 11 세 소년 유괴사건을 유괴된 자의 생환 혹은 유괴범의 검거 이전에 각각 보도한 바 이는 「유괴사건보도는 유괴된 자를 무사히 생환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유괴된 자가 범인의 수중에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보도를 보류한다」 고 한 본위원회 1967년 8월 30 일 판시(이미 8월 31 일자로 각 사에 통고)의 인명존중취지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제소는 이를 기각한다.

사실

제소인은 청구의 취지로 피소인 매일신문 1968년 2월 21일자 『영주 어린이 유괴범 검거』 제하의 기사 및 영남일보 1968년 2월 21일자 『어린이 유괴미수범 검거』 제하의 기사는 허위이므로 시정하여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결정을 구하고 청구의 원인으로 ① 제소인이 1968년 2월 경찰에 검거된 것을 단순한 폭행사건에 관련됐던 것이며, ② 1968년 2월 3일 안동교도소에 수감, 동년 5월 17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고 출소했을 뿐이라고 주장, 그 입증으로 ① 제소인이 현재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 ② 유괴범이라면 왜 다시 검거하지 않는가 하는 항변, ③ 피소인 각 신문의 관계 기사를 제출하다. 피소인들은 경북도경에 보고해 온 영주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 바탕해서 도경 조사과장의 정식발표를 그대로 옮겨 기사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입증으로 영주경찰서의 경북도경에 대한 수사보고서 사본(영주 8221-303 호 1968년 2월 19일 약취강도미수사건 검거 보고, 영주경수 822-1551<1967년 8월 24일>로 기보한건 검거하였기 보고합니다)을 제출하다.

본건에 대하여 본위원회는 직권으로 사무국 제소부장으로 하여금 진상을 조사케 하다.

이유

제소인의 청구원인 및 입증, 그리고 본위원회 제소부장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소인이 유괴사건에 관련,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나 영주경찰서는 제소인을 검거했을 때 유괴 혐의를 두었었고, 압수된 협박장의 필적이 제소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등으로 제소인을 유괴범으로 단정 경북도경에 보고까지 했으며, 도경은 1968년 2월 19일 이를 기자들에게 발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소인이 유괴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상 문제라 하겠으며, 책임있는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신문에게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위원회는 제소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시정보도해야 할 책임이 피소인들에게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제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대한일보 1969년 8월 18일자 3면 『어린이 유괴범 검거, 전화로 2백만원 요구』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비공개 경고한다.

사실

대한일보는 주문 계기 기사에서 청량리경찰서에서 유괴혐의로 구속된 전홍운(19·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오리 377)군의 성명, 주소, 사진을 공개보도하다.

이유

위 적시사실과 같이 대한일보는 「……전홍운(19·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오리 371)을 유괴혐의로 구속했는데……」 하여 미성년 피의자의 주소, 성명,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는 미성년 피의자 명예를 보호하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타인의 명예와 자유」 장 제 4항에 위반된다고 인정,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경남매일신문 1975년 9월 7일자 7면 4단 『유력 용의자 셋 뒤쫓아』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비공개경고한다.

사실

경남매일신문은 주문 계기 제하에 부산 어린이 유괴살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동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황모, 김모, 이모 등 3명을 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변태성욕자로서 그중 이모(29·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가 41)는 이 양이 유괴됐던 대신공원 지리에 밝을 뿐 아니라 코옆에 검은점 2개, 입술에 1개의 점이 있다고 보도하다.

이유

위 적시사실과 같이 경남매일신문은 단순용의자 이모의 주소를 명기, 그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하여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의한 보도기준을 위반했다고 인정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국제신보 1969년 9월 9일자 7면 4단 『결혼거절에 애인 조카 유괴』 제하의 기사, 대구일보 1969년 9월 10일자 8면 2단 『버림받은 사랑의 양값음 애인 조카 유괴한 뒤 잠적』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비공개경고한다.

사실

국제신보 및 대구일보는 주문 계기 제하에 「거제군 장승포읍 장승포리 마전동 371 이성근(4 교씨의 장녀 대숙(10)양이 윤모(26·서울)양에게 유괴당했음이 8일 경찰에 의해 밝혀져…… 형사대를 서울로 보냈다.) 운운 보도하다.

사유

위 적시사실과 같이 국제신보 및 대구일보는 유괴당한 어린이의 성명, 주소 등을 공개보도함으로써 유괴된 자가 범인의 수중에 있을 때에 원칙적으로 보도를 보류하며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취급」 키로 한다는 본위원회 어린이 유괴사건기준(1967. 8. 30)에 위반되었다고 인정,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① 조선일보 1970년 2월 1일자 7면 2단 『농아교 세소녀 유괴』 제하의 기사 및 ② 한국일보 동일자 7면 1단 『병어리 여학생 3명 유괴당해』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 비공개경고한다.

사실

조선일보는 주문 계기 제하에 안동발로 「……안동경찰서는 안동 농아학교 3년 배연금(17), 남분란(18), 박승란(15) 양 등 3소녀를 유괴한 30~50세 가량의 병어리 4명을 전국에 수배……」 운운하고, 한국일보 역시 위 제하에 안동발로 「……안동경찰서는 안동농아학교 학생 3명을 유괴한 30~50세 가량의 병어리 4명을 전국에 수배…… 괴한들은……금옥순 여인(45)의 장녀 박은숙(10·동교 3년)을 유괴하려다 실패하자…… 동교 배연금 양(17)집을 찾아가 '학교에서 배양을 만나러 왔다'고 배양을 끌어낸 다음 같은 수법으로 동교 남분란(17)과 박양을 차례로 유인……」 운운하다.

이유

위 적시사실과 같이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유괴된 소년등의 이름을 명시 유괴사건을 보도 함으로써, 「유괴사건」에 대한 본위원회 보도기준(1967. 8. 3) 「(1)유괴사건보도는 유괴된 자를 무사히 생환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유괴된 자가 범인의 수중에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보도를 보류한다…… (2) 유괴사건에 관한 전모를 보도할 경우는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취급하기로 한다.」에 위반되었다고 인정,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한국일보 1974년 7월 16일자 8면 톱 『애타는 모정 대현이를 돌려 주세요』, 조선일보 1974년 7월 16일자 8면 톱 『지능유괴 못따르는 수사』, 동아일보 1974년 7월 16일자 8면 8단 『어린이 유괴 50만원 요구』, 서울신문 1974년 7월 16일자 8면 6단 『6세 꼬마 유괴 90일째』, 중앙일보 1974년 7월 16일자 8면 톱 『어린이 유괴 3개월째 50만원 내라』 등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 비공개경고한다.

사실

한국일보를 비롯한 위 5개지는 주문 계기 제하에 지난 4월 18일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72의 28 김방주씨의 차남 대현군(6)이 이날 하오 2시경 창서국민학교 정문 앞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30대의 잠바차림의 청년에게 유괴된 사건을 다룬 것인데, 사건 발생 90일이 지났으나 아직도 미해결 상태에서 이제 경찰은 공재수사에 나섰다는 것임. 위 5개지는 유괴경위, 수사경위, 범인과 가족 간의 접촉상황 등을 소상히 취급하여 범인들의 범행수법으로 보아 1970년 10월 5일 남억진씨의 외아들 태민(5)군, 1970년 12월 최순일씨의 장남 현우(5)군 등 1974년 초까지 경인지구에서 발생한 세차례의 유괴사건의 동일범으로 보고 있다는 점, 범인들이 그동안 가족에게 보내 온 메모쪽지의 필적이 필경공이 쓴 것 같이 또박또박 고르게 썼다는 것, 봉투에 붙은 우표 뒤의 타액을 경사한 결과 범인의 혈액형이 AB형이라는 것, 경찰이 사건 발생 한달 후에 전화에 도청장치를 했다는 것, 범인들에게서 걸려온 목소리는 경기도 말씨를 쓰는 30대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40대로 추정 범인은 두명으로 보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하다.

이유

위 적시사실과 같이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는 그간의 경찰의 수사내용, 범인과 가족간의 접촉상황 등을 지나치게 소상히 보도하여 장시일에 걸쳐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범인들이 유괴된 어린이에게 일종의 위해를 범할 수 있다는 염려, 그리고 유괴된 어린이를 구출하는 데 도움이 못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본위원회의 유괴사건에 대한 보도기준(1967년 8월 30일자)에 위반된다고 인정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서울신문 1976년 3월 20일자 7면 5단 『10대가 어린이유괴 살해』 제하의 기사 및 한국일보 3월 21일자 7면 6단 『유괴살해범은 친척 재수생 김천사건』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비공개경고한다.

사실

△ 서울신문은 주문 계기 제하에 [김천=정광재 기자]발로 「경북 김천시 부곡동 63 정병호씨 (36)의 둘째 아들 홍기군(7·서부국교 1년)이 유괴당한 지 사흘만인 19일 ……숨진 시체로 발견……수사에 나선 경찰은……김천시 평화동 조강석씨(51)집에서 조씨의 맏아들 조모군(17)을 범인으로 검거……」 운운하고, △ 한국일보 역시 김천발 「속보」로 「……정홍기군(7·김천시 부곡동 63) 유괴살해사건을 수사중인 김천경찰서는 ……김천시 평화 2동에 사는 친척 조용석씨 (51)의 장남 조원석군(18·가명, 재수생)을 범인으로 검거……」 운운 보도하다.

이유

위 적시사실과 같이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사건과 관계없는 범인의 아버지의 이름을 공개하여 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타인의 명예와 자유」 장 제 2 항을 위반했다고 인정,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일본 보도협정은 구체적

일본의 경우, 이런 사례가 있다. 유괴의 염려가 있는 소년의 가출 케이스. 1982년 1월 19일 오전 1시 지나, 나고야시(市) 중구의 식당경영자(52)로부터 검찰에, 「국민학교 2년의 3남(8)이, 8일 낮 놀러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수색원이 있었다. 얼마 뒤 오전 5시께, 자택 근처의 게임센터에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보호되었다.

이 케이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수색원을 본 Y신문 경찰담당기자가 취재, 재빨리 조간에 실었다. 사회면 4단 특종기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신문이 배달되었을 때는, 어린이는 발견되어 있었다.

이 기사는 아버지의 주소, 직업, 성명, 나이는 물론, 어린이의 이름, 학교명까지 밝혔다. 결과적으로 「국민교 2년의 어린이가 학교에서 반갑지 않은 화제에 올랐다」고 데스크는 아차했다.

빨리 보도해서 어린이 찾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실명보도를 했던 것이 역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어린이의 특징, 옷차림 등을 친절히 다룬 것으로 보아도 그 의도는 알 수 있다.

1981년 12월 2일, 여대생의 유괴사건이 일어난다. 초동수사는 실패, 24일 뒤부터 공개수사로 바뀌었다. 더구나 그 수사가 크게 진전한 건, 공개수사로 바뀌었다는 배경이 있고, 그것이 「행방불명의 소년」을 다루는 데 있어 데스크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미성년자의 이런 종류의 수색원은 다음과 같이 다루어야 한다는 경험을 얻었다

- ① 놀이외출의 가능성이 짙을 때-기사로 다루지 않는다.
- ② 가출로 보일 때-기사로 다루지 않거나, 가명으로 한다.
- ③ 유괴의 우려가 있을 경우-피해자의 안전을 우선하고, 필요에 따라 가족·수사당국과의 논한 뒤,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

이처럼 유괴사건 보도의 자율규제는, 장기간에 걸쳐 뉴스를 보류했을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발견이나 수사의 진전에 마이너스가 된 예가 많다. 하지만 일본신문협회는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르고 있다

<유괴보도의 취급방침> (현재)

유괴사건 중 보도됨으로 해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따를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보도기관은 수사당국으로부터 지체없이 그 정보의 제공을 받아 사건내용을 검토한 뒤, 그 결과에 따라서는 보도를 자제하는 협정(가협정도 포함)을 맺는다. 다만, 이것이 단지 수사상의 편의상 남용되거나, 보도통제가 되지 않도록 엄격히 주의한다

일본의 경우 1980년 10월 H시에서 여중생 유괴살인사건이 있었다. 수사당국의 발표 전인데도 TV 중계차를 동원 사기를 펴려 하며 수사본부로 달려갔다. 흥분한 수사당국측도 수사상황을 발표했다

또, 같은 달 5시에서 있는 여대생 유괴사건에는 몇몇 보도기관이 사건해결 직전, 범인이 현금을 받는 현장을 카메라추재했다. 무비카메라도 움직였다.

이 일로 해서 협정(보도보류)을 위반한 보도기관 기자들은 기자단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 한편, 수사당국의 발표가 느장부렸다고 보도기자측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7. 경찰신고 두려워 하는 범인심리

다음과 같은 대현 군 유괴사건 일지에서도 드러난 대로 범인과 경찰은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 눈부시게 움직인다. 범인들은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초조감에 사로잡혀 있다.

범인들은 공통적으로 피해가족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기다려라. 조용히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여 말한다. 경찰을 강하게 의식하는 범인들은 용의주도하게 지능적으로 경찰에 대응한다.

* 김대현 군 유괴사건 일지

△4월 18일 : 하오 2시쯤 창서국민학교 앞길에서 유괴.

△19일 : 가족들이 서울시경에 미아신고,

△20일 : 미아보호소에 신고. 서울시내 각 방송국에서 미아방송.

△24일 : 일간신문에 대현 군을 찾는 광고 게재.

△27일 : 대현 군을 찾는 전단을 2천장 인쇄, 시내에 배포.

△5월 3일 : 서대문경찰서 소년계에서 「실종사건」으로 형사계 이관.

△4 일 : 상오 11 시 범인들이 대현 군 집 인근 복덕방 대월사로 편지를 띄워 「대현이집에 전하고 대현군의 주소와 이름을 상업은행 테니스 코트 담에 분필로 기재하라」 고 요구.

△6 일 : 범인들이 대현 군 집으로 편지를 보내 「돈 50 만원을 준비하여 X정구장 담에 O 표를 하라」 고 요구.

△7 일 : 대현 군의 아버지가 O 표를 했음.

△9 일 : 「대현이는 잘있다. '경찰에 신고를 말고 기다려라 ' 조용히 하는 것이 좋다」 는 편지 보냄.

△11 일 ' 「옥순 누나(대현 군 집 가정부)가 보고 싶다……」 는 대현 군의 말을 적어 보낸 편지를 보냄. 이 편지에 대현 군의 손톱크기만한 사진 동봉.

△12 일 : 하오 7 시 30 분쯤 경상도 사투리의 24~25 세 가량의 남자가 「대현이를 외국인에게 팔 단계에 있다」 고 전화.

△14 일 편지를 보내 「곧 신촌로타리에 있는 성림다방으로 나와 변소를 보라」 고 지시.

△15 일 : 경찰이 우표 뒷면에서 타액 검출. 혈액형 AB 형으로 판명.

△17 일 : 편지 2 통을 보냄. 1 통에는 대현 군의 사진과 필적을 보냈고, 다른 1 통에는 「돈을 갖고 화곡동 순현교회 간판 밑으로 오라」 지시.

△18 일 : 전화에 도청 장치 .

△19 일 : 상오 1 시쯤. 「돈 준비됐느냐. 다시 연락하겠다」 고 전화.

△20 일 : 상오 11 시 30 분쯤 「영등포구청 로터리다방으로 나오라」 고 전화.

△21 일 : 하오 2 시 30 분쯤 「내일 마지막으로 연락한다. 돈을 준비하여 대기하라」 고 전화.

△23 일 : 상오 11 시 30 분쯤 「영등포역전 역마차다방으로 나오라」 고 전화.

△6 월 15 일 : 하오 3 시쯤 「대현이 집이냐」 고만 묻는 전화.

△17 일 : 신호만 보내고 대현 군 집에서 받으면 아무 말없이 끊는 전화 두차례.

△20 일 : 보도기관들 대현 군을 찾는 기사 게재.

* 경찰측의 요망

유괴된 어린이의 구출을 제 1 의로 여기는 것이 보도기준의 정신이다. 보도측이 취재보도를 자숙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보도측의 선의적인 자숙을 수사측이 이를 단지 수사상 편의로 남용하거나, 또는 보도통제하거나 해서는 안된다. 이 점은 중요하다.

보도기준은 피해자의 생명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마땅하다. 하지만, 이를 확대해석해서 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도를 자숙」 한다는 방침은 반드시 취재보도활동을 일체 보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전부 보류한다」 는 최대한의 자제 조치를 취해온 형편이며, 이것이 관행으로 되어버렸다.

일본의 경우, 유괴보도협정(미디어측과 경찰측)의 해제는 어떤가. 협정해제의 판단은 경찰 당국과 보도측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경찰당국의 판단만으로 해제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없다는 명확한 판단이 나오면, 되도록 빨리 협정을 해제, 사건을 보도하는 게 보도기관의 사명이다.

사건이 미해결로 장기에 걸칠 경우는, 경찰측과 보도측 쌍방이 다시 협의한다.

우리의 경우, 보도기준을 지킬지라도 경찰측으로부터 제때제때 유괴사건의 상황을 보고받아야 한다. 보도는 자제할망정 유괴사건의 진행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은 미디어측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은 예방책으로 ▲ 어린이를 보호자없이 내보내거나 밤늦게 다니지 않도록 하고, ▲ 자기 어린이가 아닌 듯한 어린이를 데리고 택시, 버스 등을 타는 사람은 차량종사원이 즉시 신고하고, ▲ 각급 학교에서 어린이유괴에 대한 계도를 조회때등에 수시로 하고, ▲ 대부분의 유괴범들이 부유층의 자녀를 노리므로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차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8. 경찰 「꼭 잡는다」, 범인 「꼭 잡힌다」는 생각

경찰의 공신력과 권위를 위해 유괴사건의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 1 건의 영구미제사건은 엄청난 화근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범인은 유괴된 어린이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더 아낀다. 유괴범도 결코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심리가 될 수는 없다.

그러기에 범인이 살 길은 유괴어린이의 목숨을 가능한 한 살리는 데 있다. 범인으로 하여금 「언젠가는 검거된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반대로 경찰은 「몇해가 걸려도 언젠가는 꼭 범인을 검거하고야 만다」는 끈질긴 수사태도를 지녀야 한다. 범인 스스로 언젠가는 자신이 잡힐 것을 의식한다면 가능한 한 어린이를 살해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영구미제사건이 늘어나면 날수록 범인들에게는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용기(?)를 주게 된다.

경찰은 「꼭 잡는다」 범인은 「꼭 잡힌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경찰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경찰은 이 대원칙을 위해 많은 희생이 지불되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1988 1. 7)의 일부를 옮긴다.

「경찰은 유괴사건 수사의 일반적 패턴인 비밀수사 관행을 깨고 공개수사에 돌입했다. 또 이례적으로 범인과 유괴당한 어린이의 어머니와의 대화녹음까지 방송토록 했다. 경찰이 비밀수사의 한계성을 짐짓 깨닫고 서둘러 공개수사체제로 전환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두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하나는 어린이의 생명보전이다. 범인을 늦게 잡는 한이 있거나 수사비용과 인력의 동원 등 치러야 할 대가가 적지 않더라도 결코 어린이가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엔 1 계급특진 경쟁이나 공명다툼이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

다음으로는 범인을 반드시 검거해야만 한다.

이같은 추악하고 파렴치한 범인을 잡아 응징하지 못한다면 경찰의 명예는 물론, 사회의 기강과 도덕은 바로 설 수 없다. 더구나 제 2, 제 3의 유괴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몇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잡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도 수사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과 같은 유괴사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유괴의 아픔을 다같이 나누고 유괴범으로부터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이다.」

9. 미디어측 자체의 남용은 안돼

유괴사건에 대한 언론측의 자세는 거의 자리잡혀 있다.

아무리 언론 미디어일지라도 인간의 생명과 취재경쟁과를 맞바꿀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자숙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이러한 취재보도의 자숙에는 수사당국의 협력이 앞서야 한다.

취재를 자숙하는 대신, 수사당국은 제때제때 지체없이 유괴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진도)를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경우, 경찰대변인제도를 마련, 공표의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자쪽에서 적극적으로 신문에 보도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없지 않다.그러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수사당국과 미디어측이 의논해서 다루는 게 가장 안전할 것이다.

매스 미디어의 목표는 한말로 「비극을 예방」하는 데 있다. 유괴사건보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수사측은 보도측과 뜻을 같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벽을 두어서는 안된다. 양측이 서로 벽을 무너뜨릴 때 보도측은 수사측을 신뢰하고, 아울러 보도측은 더욱 자숙하게 된다.

10. 「비극의 예방」은 미디어의 사명

「어린이의 생명을 구출하는 데는 조건이 없다.」

양측은 이 말의 의미를 되씹었으면 한다. 비극을 막는 데는 양측이 한 통속이기 때문이다. 어린이 유괴사건은 흥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유괴사건보도를 자숙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범행수법 묘사에 대해서도 높은 책임의식이 따라야 한다.

유괴범이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 형사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기자들은 형사사건에 대한 선별인식이 높아져야 하며, 특히 유괴범을 다루는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 조선일보 사설(1974. 7. 18)의 일부는 미디어들이 얼마나 조심성있게 유괴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사회의 연대책임도 힘주어 말하고 있다

「사회도 총동원되어 대현 군을 찾자. 노래를 지어서까지 찾기운동을 벌였던 대현 군, 인걸 군의 경우처럼 또한번 우리 어린이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흉악범의 손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성의를 다하자. 어찌 이것이 대현 군 부모의 일이라고만 볼 수 있겠는가.

끝으로 범인들에게 호소한다. 자식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로서는 모르겠으나, 그대들이 어려 부모 품 안에서 자랐을 때를 잠시라도 생각해 보라. 어떠한 절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나 철없는 어린이를 볼모로 빼앗아 이런 몹쓸 짓을 할 수 있겠는가. 한가닥 애처로움이 가시지 않았다면 대현 군을 한시라도 빨리 그리운 부모의 품안으로 돌려 보내주자. 법이 알더라도 그럼으로써만 그대들은 구원의 여지를 얻을 수 있다. 대현 군과 그

부모의 애처로움 앞에 그대들도 가슴 한구석에 피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어린이 유괴사건은 이지러진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도 없다. 사회의 건전한 도덕성을 말하기 전에 어린이유괴사건만을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자유는 책임을 뜻한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무질서를 가져온다. 매스 미디어는 한층 더 자유언론을 위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드높여야 한다.

- 서울대 사대, 고려대 교육대학원
- 서울신문 사회부장, 한국일보 사회부장, 한대, 성대 및 연대강사
- 저술 : 「기자가 되려면」, 「매스컴 문장강화」, 「매스컴 취재와 보도의 실제」(번역)외 다수
- 현재 한국홍보연구소 소장